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0. 27 선고 2021가단508479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신용보증기금
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

피 고 주식회사 A
변 론 종 결 2021. 9. 29.
판 결 선 고 2021. 10. 27.

주 문

- 가. 소외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3. 2. 체결된
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3. 3.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
접수 제328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2. 판단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백규

별지